



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
REPUBLIC OF INDONESIA



THE CONSTITUTIONAL COURT OF
THE REPUBLIC OF KOREA

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간 양해각서

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(이하 “ 당사자” 라 한다)는 향후 제도적 협력의 틀을 수립, 강화하기 위한 양자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양국 헌법재판소 간 사법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, 각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조. 목 적

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각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헌법 분야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.

제2조. 협력 범위

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.

- (a)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 및 경험 상호 교환
- (b) 요청 시 당사자 권한으로 채택한 법률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성격의 문서와 연구 인력의 교환·교류
- (c) 상호 관심 있는 사법적, 법률적 이슈에 관한 공동 회의 및 세미나 개최
- (d) 지식, 경험, 공식 발간 연구자료 및 전문성의 교환

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5년간 유효하다.
본 양해각서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표의사를 서면으로 최소 3개월
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. 발효, 기간 및 종료

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.

제5조. 개정

본 양해각서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
해결한다.

제4조. 이견 조율

결정한다.
3. 필요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의 비용은 사안별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
2. 본 양해각서에 따라 교환되는 문서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한다.

1. 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당사자 간 연락은 각 당사자의 국제협력 담당부서에서
담당한다. 이와 관련하여, 당사자들은 본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담당 부서와
직원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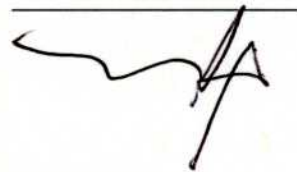
제3조. 이행체계

- (e) 도서관 간 교류
- (f) 당사자 간 합의된 기타 협력 활동

장관
장관

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

아리ادی پوری



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

본 양해각서는 2016년 3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,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고, 각각은 동등한 정본이다.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.